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3나9083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3나90835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8. 30 선고 2022가단53098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츠

담당변호사 천은선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

변론종결 2024. 9. 11.

판결선고 2024. 11. 13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. 8. 30. 선고 2022가단53098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1. 2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. 1. 28. 접수 제8344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
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평수, 판사 진현지, 판사 김혜진

별지